울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	2020고단2262 사기
피 고 인	유매매(가명) 남 90.생 주거 울산 울주군
검 사	이홍석(기소), 신의호(공판)
판 결 선 고	2020. 9. 1.

주 문

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.

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
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.

이 유

범 죄 사 실

유대표(가명)는 인천 부평구에 있는 중고차 매매상사인 '○○모터스'의 대표이고, 피고인 및 임사원(가명)은 위 '○○모터스'에 소속된 중고자동차매매종사원들이다.

피고인은 유대표, 임사원과 함께 중고차를 매수하려는 고객에게 실제 차량의 매매대금보다 부풀린 액수를 차량 매매대금이라고 알려주고, 알선수수료에 대해 언급하지 아

니하고 그 차액금(부풀린 차량 매매대금 - 실제 차량 매매대금) 상당을 알선수수료 명목으로 나눠가지기로 마음먹고, 유대표는 허위 매물로 광고를 하여 고객을 모집하고 수익금을 분배하는 역할, 피고인 및 임사원은 직접 고객을 만나 중고차를 판매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.

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과 임사원은 2018. 3. 12.경 인천 남구에 있는 '●●모터스'라는 상호의 중고차 매매 사무실에서, 피해자 이피해(가명)에게 ##@####호 코란도 차량을 소개시켜주고 가격은 2,4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.

그러나 사실 위 차량의 매매대금은 1,360만 원이었고 피고인은 자동차매매계약서에 매매알선수수료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위 차량의 실제 매매대금을 고지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그 차액금 1,040만 원 상당을 가로챌 생각이었다.

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중고차구매 대출업체로부터 차량구매대출 2,400만 원을 받게 하여 매매대금 명목으로 2,400만 원을 (주)●●모터스 계좌로 송금받았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유대표, 임사원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,04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(생략)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형법 제347조 제1항, 제30조(벌금형 선택)

1. 노역장유치

형법 제70조 제1항, 제69조 제2항

1. 가납명령

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

양형의 이유

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,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115만 원에 불과한 점, 이 사건 범행 무렵에 범한 동종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으나,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판사 김정환 _____